

3. 군역(軍役)

조선시대의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농민들이 지는 것으로, 양역이라고도 하였다. 군정(양정)들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징발되면 정병(正兵 : 상변군, 정군)으로서 서울에 올라와 복무하거나 여러 군진에서 수자리를 섰다. 그러나 모든 양인 농민들이 현역 병으로 징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번상하는 정병을 재정적으로 돕는 봉족(奉足 : 보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조선 초기 순천지역에서는 몇 명의 군역을 지고 있었을까. 15세기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순천에서는 시위군 17명, 수호군 79명 총 96명의 상변군을 배당받고 있었다. 당시 순천의 가호는 467호였고, 이 중 양반호를 제외한 상민호에서 96명의 상변군역을 졌고, 그 나머지는 봉족으로 상변군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16세기 이후에는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군이 보인에게 받은 조역가로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대립제를 양성화하여 군적수포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병조에서 군역 의무자에게 1년에 군포 2필을 징수하고, 그것으로 군인을 고용하는 제도가 나타났으며, 지방의 각 영진에서 정병이 일정한 군포를 영진에 바치고 방수를 면하는 방군수포가 행해졌다.

이러한 시기 순천지역의 군역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가 『충평지』의 군정조이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평지』: 충의위 13명, 군공(의용대) 121명, 충찬위 5명, 정로위 88명, 별시위 31명, 갑사 13명, 기병 538명, 보병 132명, 수군 535명, 조군 36명, 봉수군 138명, 사복제원 24명, 편오초군 701명, 영속각관초군공 통 2,731명. 이상 5,106명.

즉, 순천지역에서는 14종류에 5,106명의 군역을 져야 했는데 조선 초기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이다. 이때의 호구수가 3,587호였으므로 양역호 1호당 2명 이상의 군정을 내었던 것 같다.

초기에 정비되었던 5위제는 병농일치제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비 당시부터 5위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임진왜란을 당하여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이에 따라 임진왜란 중에 군제의 개편작업이 시작되어, 선조대에 훈련도감을 신설하고 삼수병을 양성하였다. 이어 인조대와 숙종대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위영이 만들어져 훈련도감과 함께 5군영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양반에서 공사천민까지 역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징발하여 혼성군으로 속오군을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군역의 수가 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였고, 군현에서도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군정에서 역가를 징수하였다.

바로 이 시기(17~18세기) 순천지역의 군정 현황은 1729년의 『친증승평지』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친증승평지』: 충의위 17명, 충익위 220명, 충찬위 13명, 어영군 118명, 어영군 보인 294명, 어영군 자포보인 136명, 금위군 118명, 금위군 보인 637명, 금위군 자포보인 136명, 신선 95명, 기병 139명, 경보병

9명, 수군 890명, 시노주사 116명, 조군 45명, 정병 1,711명, 포보 310명, 군향 보인 83명, 낙강여정 4명, 무학 정병 282명, 봉수군 213명, 사복제원 45명, 유조서리보인 7명, 악공호수 21명, 보충대여정 4명, 경사기장인 13명, 공조 장인 264명, 병조 장인 493명, 운영 모군 99명, 병영 별포 23명, 아병 군뢰 6명, 기수 군뢰 20명, 편오초군 1,536명, 영속각관초군공통 7,288명. 이상 1만 5,405명.

18세기 초 순천에서는 전보다 크게 늘어난 1만 5,405명의 군정을 저야 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의 부재로 알 수 없지만, 이 중 일부는 현역병으로 입대하였지만, 대부분은 군포 2필을 내는 군보병이었다. 당시 가호수가 1만 4,318호였으니 양반호와 면역호를 제외하면 양역호당 2명 정도의 군정을 내었을 것이다. 현재 순천지역의 군역 관계자료와 호적대장이 남아 있지 않아 역인의 규모를 알 수 없다. 19세기 말에 작성된 관물 인수인계서인 *순천군각장중기*(順天郡各掌重記)』(서울대 규장각 도서관 소장, 청구번호 12517, 1898년)에 따르면, 호적고에 1681년부터 1894년까지 식년 호적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애석하기 그지 없다.

가호에 비해 군정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 사람의 장정이 이중, 삼중으로 군역을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군정들이 바치는 군포의 양 역시 소속에 따라 2필 또는 3필 등으로 균일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전국의 장정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군현별로 일정액을 총액제로 배정하였다. 여기에 군포수납의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 한 수령과 아전들의 농간까지 겹쳐 백골징포, 황구침정, 족징, 인징 등의 폐단이 자행되었다. 또 장정 가운데서도 형편이 나은 자들은 납속 등의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사서 양역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이 때문에 양역의 부담은 가난한 농민층에게로 한층 더 집중되어 그들의 파산과 유망을 촉진시켰다.

이에 양역의 폐단을 시정하자는 양역변통론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로 1750년(영조 26)에 군역법이 시행되었다. 군역법에 따라 정부는 농민들이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감해주었고, 줄어든 군포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일부 상류 신분층에게도 선무군관(選武軍官)이라는 이름으로 군포 1필을 부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주에게 토지 1결마다 미곡 2말을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였다. 또 종래 각 궁방이나 아문에서 받아들여던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도 군역법을 관리하는 군역청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군역법의 시행과 함께 양역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1734년에는 각 도마다 담당자를 두어 도의 양역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1742년에는 숙종 말년에 설치했다가 유명무실화한 양역사정청을 다시 설립하고, 사정청 관원들에게 중앙기관의 양역 명목 가운데 부당하게 등재된 것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작성된 문서가 *향역실총*(良役實總)』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향역실총*』을 근거로 군역법은 실시되었는데 *향역실총*』에는 각 도읍의 양역수가 기록되어 있다. *향역실총*』과 *여지도서*』를 통해 18세기 말 순천 지방의 양역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향역실총』 : 훈련도감 포수보 313명, 군향보 83명, 어영청 상변보군 127명, 보군자보 136명, 관납보 258명, 경안보 40명, 금위영 상변보군 127명, 보군자보 136명, 관납보 638명, 병조 기병 142명, 보병 15명, 금군보 491명, 보직 9명, 장악원 악공보 18명, 사옹원 장인 14명, 사복시 제원 45명, 공조 장인 264명, 조군호보 45명, 수군호보 2,985명, 봉군 77명, 봉군보 152명, 감영 제번군관 23명, 약재진상배지보 14명, 모군 310명, 영장인 95명, 병영 기병 4명, 진군 32명, 신선 86명, 차비군 3명, 좌수영 대변군관 150명, 기폐관 35명, 장하군 30명, 군뢰 100명, 기수 100명, 취타수 100명, 군수군 150명, 수용군 476명, 각색장인 160명, 우후군관 20명, 기폐관 12명, 장하군 15명, 군뢰 30명, 기수 20명, 순천진 대변군관 50명, 토포군관 80명. 이상

8,210명.

『해지도서』: 훈련도감 포수보 313명, 군향보 83명, 어영청 정군 127명, 어영청 정군자보 136명, 어영청 관납보 298명, 금위영 정군 127명, 금위영 정군자보 136명, 금위영 관납보 638명, 병조 기병 142명, 보병 15명, 금군보 491명, 보직 9명, 장악원 악공보 18명, 사복시 제원 59명, 공조 장인 264명, 호조 조군호보 45명, 감영 체번군관 23명, 진상배지보 14명, 감영 장인 95명, 감영 모군 23명, 아병군뢰 6명, 병영 친병초관 1명, 병영 기병 4명, 진군 32명, 차비군 3명, 신선 86명, 봉수별장 24명, 봉군 79명, 봉군보 158명, 전영 속오별장 1명, 천총 1명, 파총 2명, 초관 12명, 기패관 15명, 교사 16명, 별대 105명, 별대보 210명, 보군 잡색 1,381명, 보군 잡색보 1,381명, 좌수영 수군 2,985명, 수용군 404명. 이상 9,962명.

이처럼 18세기 말의 군액은 이전의 1만 5,000여 명에서 8,000~9,00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당시 호총은 1만 4,199호(1860, 『해지도서』) 또는 1만 3,669호(1789, 『호구총수』) 또는 1만 3,777호(1792, 『춘천부읍지』)였으므로 가호당 1명 정도의 군정을 부담하였던 것 같다.

군포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농민의 부담은 가벼워졌고 농민의 피역과 저항도 다소 진정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정부의 장정수 책정이 급격히 많아짐으로써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또 향리들의 농간과 부민들의 피역으로 면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군액은 많은데 양정은 적은 군다민소한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고, 족정·인정·첩정 등의 폐단이 다시 나타났다.

결국 19세기 들어와서는 군정을 면리별로 배정하고, 그 군정가를 면리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납부하는 동포제(洞布制)가 실시되었다. 순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4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고문서 전시회에 황전면동포이정절목(黃田面洞布釐正節目)』(1871)이라는 자료가 전시된 바 있었다. 그 자세한 운영내역은 알 수 없지만, 이를 보면 순천에서는 양반은 적게 부담하고 상민은 많이 부담하는 동포제가 1801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1862년에 개정되었으며, 인근 동북지역과 함께 전남지역에서는 상당히 일찍 동포제가 시행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황전면의 호포세 현황

군보(명)		호포세(냥)		군보(명)		호포세(냥)	
포 보	44	전 391.28	매 명 8.87	약 재	9	전 18.00	매명 2.00
어 보	27	143.64	5.38	선 무	28	65.80	2.35
공 장	43	228.76	5.38	순 모	17	39.95	2.35
병 장	56	292.32	5.22	보 솔	41	73.80	1.80
기 병	3	15.96	5.32	군 관	30	69.00	2.30
제 원	2	10.64	5.32	장하군	2	2.00	1.00
수 군	95	209.00	2.20	집 사	2	4.00	2.00
정 병	150	330.00	2.20	사색보	43	47.30	1.10
보 미	75	204.00	2.72	지장보	2	4.40	2.20
강 자	17	46.75	2.75	목유보	8	17.60	2.20
민 자	20	40.00	2.00	금 군	10	7.00	0.70
신 선	11	25.30	2.30	어 군	9	6.30	0.70
진 군	6	13.80	2.30	전산세	3	6.60	2.20
봉 군	37	85.10	2.30	노약공	2	미 10.00말	5.00말
조 군	5	11.50	2.30	세 초 마감비		전 85.00	
수 용	31	68.20	2.20	계	828	2,562.00	

동포제는 대원군이 1871년에 호포제로 전면 개편하였다. 그에 따라 순천에서도 종전의 동포제를 호포제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그에 관한 자료가 바로 『황전면동포이정절목』이나 황전면의 것만을 기록하고 있어 순천 전체의 호포제 현황은 알 수 없다.

호포제에서는 먼저 순천 전체의 호포보의 수를 책정하였다. 1872년의 『호남읍지』에 “경각사 및 각영문 소속의 수륙각군”으로 8,539명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호포보의 현황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는 호포보의 보당·보가에 따라 호포세를 책정하였다. 군보가는 군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호포보와 호포세를 호수에 따라 전 면에 분배하고, 각 면에서는 리별로 다시 분배하였다. 이때 응역자, 역속인, 재인, 백정, 속오군 등만이 제외되었다. 이전과 달리 양반, 부자, 향리, 관노 등도 상민과 함께 균일하게 호포세를 부담하여, 신분으로 생긴 차별은 사라졌던 것이다. 면리에서는 그 호포세를 기금으로 두어 이식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된 황전면의 호포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황전면에서는 828명의 군보에 해당하는 호포세로 2,562냥 가량이 배당되었다. 이 호포세는 정월에 307냥, 4월에 354.1냥, 7월에 600.3냥, 10월에 1,300.6냥씩 4번으로 나누어 납부되었다. 황전면에서는 호포세 2,562냥을 총호 728호에서 호당 3.52냥을 거두어 마련하였다. 각 호에서는 3.52냥을 정월에 0.43냥, 4월에 0.48냥, 7월에 0.83냥, 10월에 1.78냥씩 부담하였다.